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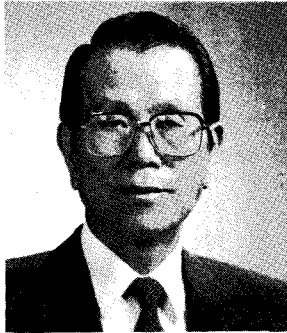
I. 序論

特許廳이 發刊한 改正法(90年法)에 따른 「**審査便覽**」의 26.02 特許請求範圍의 獨立項의 記載要領에 의하면, 獨立項은 實質的으로 同一한 內容을 重複記載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實質的으로 同一한 內容**”이란 表現을 쓰고 있지만, 特許廳의 審査實務에 있어서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을 複數의 獨立項에 記載하는 것을 許容하지 아니하여 온 點을 勘案하면, 上記 審査便覽에서 말하는 “**實質的으로 同一한 內容**”이란 實質的으로 同一한 內容의 發明 즉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審査便覽의 規定과 審査實務는 現行特許法 및 同法施行令에 그 根據를 두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規定에 違背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筆者가 알기로는, 特許廳審査官이나 審判官들중에 이러한 事實을 理解하고 있는 사람은 極小數에 不過하기 때문에 特許請求範圍에 同一發明에 관한 複數의 請求項이 記載될 수 있다는 點을 論證해 보임으로써 이들의 잘못된 認識을 바로 잡고 나아가 特許審査實務에 있어서도 同一發明에 관한 複數請求項의 記載가 可能하도록 하게 하는 것에 本論文의 目的이 있다.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에 관하여, 特許法施行以後 單項制를 유지하여 오다가 1980年 12月 31日 改正공포된 特許法에서 最初로 多項制를 採擇하였는 바, 그 多項制의 內容은 EPC의 制度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었다. 이러한 事實은 特許法令의 관련條文과 EPC의 관련條文을 對比해볼 때 그 內容이 거의 同一하다는 事實에 의하여 確認할 수 있다. EPC의 運營實務에서는 同一發明을 複數의 請求項에 記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特許廳에서는 이를 許容하지 않게된 背景은 오랫동안 施行되어 왔던 單項制에 익숙해있던 點과 多項制를 導入할때 多項制에 대한 研究가 充分치 않았던 點 및 多項制에 관하여 EPC와 法規定을 전혀 달리하는 日本特許法(從前法) 하에서의 審査實務를 그

同一發明의 複數請求項 記載



李俊九
〈辨理士〉

目次

- I. 序論
- II. 特許法 및 同法施行令의 관련 規定
- III. 同一發明의 複數獨立項記載의 必要性
- IV. 1特許出願의 要件規定과의 關係
- V. 特許廳의 既存審査實務의 背景
- VI. 實用新案法의 關聯規定
- VII. 結論

〈이번호에 전제〉

대로 模倣한 점에 있다고 사료된다.

以下에서는 現行特許法 및 特許法施行令하에서 同一發明을 複數의 請求項(보다 具體的으로는 獨立項)에 記載할 수 있다는 點을 理論的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II. 特許法 및 同法施行令의 관련規定

現行特許法 第 42 條 第 4 項은 “第 2 項 第 4 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에는 保護를 받고자 하는 事項을 記載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 또는 2 以上 있어야 한다. 그 請求項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여야 한다.

1.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發明이 明確하고 簡潔하게 記載될 것

3. 發明의 構成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事項만 으로 記載될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고,

同條 第 5 項은 “第 2 項 第 4 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施行令 第 5 條는 “① 第 42 條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의 記載에 있어서는 獨立請求項(이하 “獨立項”이라 한다)을 記載하고, 그 獨立項을 限定하거나 附加하여 具體化하는 從屬請求項(이하 “從屬項”이라 한다)으로 記載할 수 있다. 이 境遇 必要한 때에는 그 從屬項을 限定하거나 附加하여 具體化하는 다른 從屬項을 記載할 수 있다.

② 獨立項은 發明의 性質에 따라 適正한 數로 記載하여야 한다.

③ 從屬項은 獨立項 또는 다른 從屬項을 限定하거나 附加하여 具體化하는데 必要한 數로 記載하여야 한다.

④ 從屬項은 그 從屬項이 속하는 獨立項과 그 獨立項의 다른 從屬項중에서 1 또는 2 以上의 項을 引用하여야 하며, 이 境遇 引用되는 項의 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⑤ 2 以上의 項을 引用하는 從屬項은 引用되는 項의 番號를 擇一的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⑥ 2 以上의 項을 引用하는 從屬項은 2 以上의 項이 引用된 다른 從屬項을 引用할 수 없다.

⑦ 獨立項 또는 다른 從屬項을 引用하는 從屬項은 引用되는 獨立項 또는 다른 從屬項보다 먼저 記載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各 請求項은 項마다 行을 바꾸어 記載하고, 그 記載하는 順序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一連番號를 붙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들 規定 중에서 獨立項의 數에 관하여 判斷根據가 되는 條項은 特許法施行令 第 5 條 第 2 項이다. 이 條項은 獨立項은 發明의 性質에 따라 適正한 數로 記載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 여기서 發明이란 말은 文理的으로 解釋하면 1 發明 즉 實質的으로 同一性의 範疇內에 있는 1 發明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特許請求範圍에는 1 發明뿐만 아니라 1 群의 發明도 包含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內容上 1 發明과 1 群의 發明을 包括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同條項은 1 發明도 그 發明의 性質에 따라서 適正한 數로 記載될 수 있다는 點을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特許廳 審査實務와 審査便覽에서 實質的으로 同一한 內容의 發明에 對하여 重複記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 根據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上記 條項에 違背되는 것이다.

問題는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 어떠한 경우에 2 以上의 獨立項으로의 記載를 許容할 것인가에 있는 바, 이를 把握하기 위하여는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 重複獨立項으로 記載할 必要性에 對하여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同一發明의 複數獨立項記載의 必要性

複數獨立項의 記載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同一發明이란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을 意味하고 形式的으로 同一한 發明 즉 表現이 同一하거나 差異가 있어도 그 差異가 同一內容을 表示하는 單純한 表現上의 差異에 不過한 發明은 이에 該當되지 않는다. 形式的으로 同一한 發明을 重複記載하는 것은 特許法施行令 第 5 條

第 2 項에도 違背되었지만, 特許法 第 42 條 第 4 項 第 2 號에도 違背될 것이다. 또한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인 경우에도 어떤 發明을 限定하거나 附加하여 具體化하는 發明은 從屬項으로서 記載하여야 하기 때문에 複數의 獨立項으로서는 記載할 수 없다. 그 以外의 경우는 發明의 性質에 따라 그 發明을 多面的으로 클레임하여 保護할 必要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 複數의 獨立項이 記載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必要性이 認定되는 代表的인 경우는 發明의 카테고리가 相違하면서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의 경우이다.

現行特許法第 94 條는 特許權者는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實施할 權利를 獨占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同法第 2 條 第 3 號는 “實施”의 定義에 對하여 “實施라 함은 다음 各目的 1에 該當하는 行爲를 말한다.

가. 物件의 發明인 境遇에는 그 物件을 生産, 使用, 讓渡, 貸與, 輸入 또는 展示(讓渡나 貸與를 위한 경우에 限한다. 以下 같다)하는 行爲

나. 方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方法을 使用하는 行爲

다. 物件을 生産하는 方法의 發明인 경우에는 나目的 行爲外에 그 方法에 의하여 生産한 物件을 使用, 讓渡, 貸與, 輸入 또는 展示하는 行爲”라고 規定하여 物件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 및 物件을 生産하는 方法의 發明에 對하여 그 內容을 달리하여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發明의 카테고리 的인 相異에 따라 特許權의 權利範圍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發明을 物件의 製造裝置로서 클레임한 境遇는 그 製造裝置를 生産販賣하는 等의 行爲는 그 發明의 實施에 該當되어 他人이 그러한 行爲를 하면 侵害로 되지만, 그 製造裝置에 의해 生産된 物件을 販賣하는 行爲는 그 發明의 實施에 該當되지 않고 他人이 그러한 行爲를 하여도 原則的으로 侵害가 되지 않는다. 이에 反해, 發明을 物件을 生産하는 方法으로

서 클레임한 경우는 그 方法에 의하여 製造된 物件을 販賣하는 行爲는 그 發明의 實施에 該當되어 他人이 그러한 行爲를 하면 侵害로 되지만, 그 物件의 製造裝置 自體를 生産販賣하는 等의 行爲는 그 發明의 實施에 該當되지 않고 他人이 그러한 行爲를 하여도 原則的으로 侵害가 되지 않는다. 그 物件의 製造裝置가 그 物件을 生産하는 데에만 使用하는 경우에 限하여 間接侵害로서 保護받을 수 있을 뿐이다.

物件의 製造裝置의 發明과 物件의 生産方法의 發明相互間以外에도 그와 같은 경우의 例를 들 수 있다. 出願인이 新規한 콘크리트 強化混和劑의 添加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強化하는 것을 發明한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타입으로 클레임을 記載할 수 있을 것이다.

1. A와 B로 된 콘크리트 強化混和劑
2. A와 B로 된 콘크리트 強化混和劑를 使用한 強化콘크리트의 製造方法
3. A와 B로 된 콘크리트 強化混和劑에 의하여 強化된 콘크리트

이 경우 클레임 1 만으로 記載하면 他人이 그러한 強化콘크리트를 販賣하는 行爲 自體는 콘크리트 強化混和劑의 發明의 實施에 該當하지 않기 때문에 特許權者는 他人이 그러한 콘크리트 強化混和劑를 使用한 行爲를 立證해내야 하고 또 그 使用行爲에 對하여만 侵害排除를 請求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클레임 2 나 클레임 3 만으로 記載하였을 때 他人이 強化混和劑를 販賣하는 경우에 이를 排除하려면 그 強化混和劑가 그 強化콘크리트의 生産以外에는 使用되지 않는다는 點을 立證하여 間接侵害로써만 主張할 수밖에 없다.

上記와 같은 경우 클레임 1, 2 및 3을 同時에 記載하면 特許廳의 審査實務는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을 重複記載한 것에 該當한다는 理由로 拒絕査定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審査實務는 그 法的 根據도 없을 뿐만 아니라 上記와 같은 發明의 多面的 保護라는 現實的 必要性을 外面한 것으로서 마땅히 是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權利行使나 라이선스에도 便利하게 되는 것이다.

上記例에서 클레임 1과 3은 같은 物의 發明임에도 不拘하고 重複記載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發明의 카테고리가 同一하면서 實質同一의 發明에 대하여 重複記載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例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들 수 있다.

例：1. 組成式, 物性으로 定義한 天然物 A

2. 構造式으로 定義한 天然物 A

例：1. A를 有效成分으로 하는 殺菌劑

2. A 및 B 를 有效成分으로 하는 殺菌劑

(B 는 公和의 殺菌劑로서 相乘效果가 없는 混合劑)

以上과 같은 경우는 同一發明을 多面的으로 클레임함에 의하여, 發明을 보다 適切하고 效率的으로 保護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Ⅶ. 1 特許出願의 要件規定 (出願의 單一性)과의 關係

1 特許出願의 要件은 1特許出願에 包含될 수 있는 發明의 範圍를 말하는 것으로서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에 관한 1發明이 複數의 請求項에 記載될 수 있는나하는 問題와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特許法施行令 第6條는 이에 對하여 誤解를 誘發하게끔 規定하고 있어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特許法 第45條는 “① 特許出願은 1發明을 1特許出願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總括的 發明의 概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에 對하여 1特許出願으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特許出願의 要件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라고 規定하고 있고, 特許法施行令 第6條는 “① 法 第4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1 特許出願의 要件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여야 한다.

1. 物件 또는 方法에 관한 1獨立項을 記載한 出願

2. 物件에 관한 1獨立項을 記載한 경우에 다음 各目の 獨立項을 選擇하여 記載하거나 모두 記載한 出願

가. 그 物件을 生産하는 方法에 관한 1獨立

項

나. 그 物件을 使用하는 方法에 관한 1獨立項

다. 그 物件을 取扱하는 方法에 관한 1獨立項

라. 그 物件을 生産하는 機械, 器具, 裝置 其他의 物件에 관한 1獨立項

마. 그 物件의 特定 性質만을 利用하는 物件에 관한 1獨立項

바. 그 物件을 取扱하는 物件에 관한 1獨立項

3. 方法에 관한 1獨立項을 記載한 경우에 그 方法의 實施에 直接 使用하는 機械, 器具, 裝置 其他의 物件에 관한 1獨立項을 記載한 出願

② 第1項 各號의 경우에 1獨立項만으로 包括하여 記載할 수 없을 때에는 法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群의 發明에 該當하는 경우에 限하여 2 以上の 獨立項으로 記載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1項에 對하여 살펴보면, 第1號는, 1發明에 관한 規定이고, 第2號 各目, 第3號는 1群의 發明에 관한 規定임을 알 수 있다. 1群의 發明은 서로 別個의 發明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第2號, 第3號는 實質的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는 適用되지 아니한다(1群의 發明의 경우에는 分割出願이 可能하나, 實質同一의 發明의 경우에는 分割出願이 可能하지 않다는 差異점이 있다). 如何든, 第1項은 1發明에 對하여 1獨立項이 記載될 수 있다는 點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同施行令 第6條 第2項을 살펴보면, 1獨立項만으로 包括하여 記載할 수 없을 때에는 1群의 發明에 該當하는 경우에 限하여 2以上の 獨立項으로 記載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마치 1發明의 경우에는 2以上の 獨立項으로 記載할 수 없는 것처럼 規定하고 있다.

이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과 關係가 없는 1特許出願의 要件規定인 上記條項이 請求項의 項數에 對하여 制限하고 있는 셈이 되어 明白히 잘못된 것이다.

筆者는 同條項이 왜 이렇게 規定되었는지에

對하여 筆者 나름대로 調査를 해본 즉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었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特許法上의 出願의 單一性規定과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에 관한 多項制는 EPC의 規定과 制度를 그대로 導入한 것이었다. 特許法 第45條 第1項의 “하나의 總括的 發明의 概念을 形成하는 1 群의 發明”이란 概念은 EPC 第82條의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concept”의 表現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1項은 EPC 規則 第30條를 模倣한 것이고(1990년 改正前의 舊特許法施行令 第2條의 4 第1項은 EPC 規則 第30條와 거의 同一하게 規定되어 있으나, 現行法施行令은 조금 修正되었다). 現行特許法 第42條 第4項 및 同法施行令 第5條는 EPC 規則 第29條를 模倣한 것이다.

그런데,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2項은 EPC 規則 第29條 第2項을 模倣한 것인 바,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2項은 1特許出願의 要件에 관한 規定인데 反해 EPC 規則 第29條 第2項은 特許請求範圍의 記載에 관한 規定이므로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2項의 規定體制自體도 잘못 된 것이다.

EPC 規則 第29條 第2項은 “Subject to article 82, an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contain two or more independent claims in the same category(product, process, apparatus or use) where it is not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pplication, to cover this subject matter by a single claim”라고 規定하고 있는 바, 이를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2項과 對比해보면, “Subject to article 82”가 “法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群의 發明에 該當하는 경우에 限하여”라는 말과 對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特許法施行令 第6條 第2項이 EPC 規則 第29條 第2項을 模倣함에 있어서 번역상의 誤謬를 犯하였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EPC 第82條는 1發明 또는 1群의 發明을 1特許出願으로 할 수 있다는 規定이지 1群의 發明만을 1特許

出願으로 할 수 있다는 規定이 아니므로 “Subject to article 82”을 번역할 때에는 “法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發明 또는 1群의 發明에 該當하는 境遇에 限하여”라고 번역하여야 하는 것이다. 筆者는 바로 이러한 번역상의 誤謬때문에 上記와 같은 解釋上의 問題點이 생긴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그리고 基本的으로 이러한 問題點이 생기게 된 것은 多項制에 대한 認識不足에 緣由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點을 考慮해볼 때, 施行令 第6條 第2項 改定되어야 마땅하겠으나, 비록 改定되기 前이라 하더라도 施行令 第6條 第2項에서 말하는 1群의 發明概念은 1發明의 概念까지 包括하는 뜻으로 使用되었다고 善意로 解釋함에 의하여 施行令 第6條 第2項이 實質적으로 同一한 發明에 대한 2以上の 獨立項을 記載하는 것을 禁하는 條項이 아니라고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V. 特許廳 既存審査實務의 背景

實質同一의 發明에 對하여 複數獨立項의 記載를 許容하지 않는 既存審査實務의 背景은 序論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施行되어 왔던 單項制에 익숙해 있던 點과 多項制를 導入할 때 多項制에 대한 研究가 充分치 않았던 點 및 多項制에 관하여 EPC와 法規定을 전혀 달리하는 日本特許法(從前法) 下에서의 審査實務를 그대로 模倣한 點에 있다고 思料된다.

이중에서도 直接的으로 日本國에서의 審査實務가 가장 큰 影響을 미쳤다고 思料되는 바, 日本國의 改正前의 特許法下에서는 實質적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 2以上の 必須要件項을 記載하는 것이 不可能하다. 이는 日本國의 多項制의 特殊性때문이었지 歐美의 多項制도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日本國의 多項制는 1發明에 對하여 1必須要件項과 多數의 實施態樣項이 記載될 수 있다는 意味의 多項制이었지 1發明에 對하여 自由롭게 必須要件項과 實施態樣項을 記載할 수 있는 多項制가 아니었다.

또한, 日本國에서는 1發明에 對하여 1出願밖에 할 수 없었고, 相互관련이 있는 發明들에 對하여는 併合出願制度를 施行하고 있었다. 이러한 日本國特許法下에서의 審査實務를 그대로 導入하다보니 特許廳의 既存審査實務에서도 實質적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 2以上の 獨立項의 記載를 許容하지 않게 된 것이다.

事實 日本國의 舊特許法下의 多項制는 發明의 多面的 保護에 相當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1987년에 全面 改定되어 必須要件項과 實施態樣項의 差別도 撤廢하고 歐美의 多項制보다도 앞서는 進歩的인 立法을 하게 된 것이다. 日本國特許法 第36條 第6項은 “前項의 規定은 그 記載가 하나의 請求項에 관한 發明과 다른 請求項에 관한 發明이 同一한 特許請求範圍의 記載로 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여 明示적으로 實質同一의 發明이 2以上の 請求項으로 記載되는 것을 許容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指摘할 것은 同條項은 確認規定이라는 事實이다. 同條項이 없더라도 請求項에 記載된 特定發明이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發明의 構成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事項만을 記載한 것이라면 實質同一의 發明이라도 複數의 請求項에 記載할 수 있는 것이다.

Ⅶ. 實用新案法の 關聯規定

實用新案法 第9條 第1項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은 1考案을 1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고, 同法施行令 第2條는 “法 第9條 第2項에 의한 1實用新案登錄出願의 要件은 物品에 관한 1 獨立項을 記載한 出願으로 한다. 다만, 1獨立項만으로 記載하는 不適合한 경우에는 2以上の 獨立項으로 記載할 수 있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實用新案法은 1群의 考案이라는 概念을 想定하고 있지 아니하고 1 考案에 對하여만 1出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同法施行令 第2條 但書規定에 의하면, 一應同一考案에 對하여 明示적으로 複數의 獨立項의 記載를 許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考案은 物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1群의 考案을 認定할 수 있을 것인가, 認定한다면 어느 範圍까지 認定할 것인가, 實質同一의 考案과 어떻게 區別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問題는 別個로 檢討되어야 할 問題일 것이다.

Ⅷ. 結論

以上에서 詳細히 살펴본 바와 같이, 韓國特許法下에서 實用的으로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 2以上の 獨立項의 記載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特許廳審査實務는 전혀 그 法的 根據를 發見할 수 없는 잘못된 慣行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即刻 是正되어 發明者의 多面的 保護라는 現實的 必要性을 充足시켜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特許廳으로서의 實質同一의 發明이 複數의 獨立項에 記載되는 것이 發明의 性質에 비추어 適正하지 아니하고 發明의 明確하고 簡潔한 記載에 明白하게 背馳되는 경우에 限하여 매우 制限적으로 이를 許容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形式的으로 同一한 發明 즉 表現이 同一하거나 差異가 있어도 그 差異가 同一內容을 表示하는 單純한 表現上의 差異에 不過한 發明에 限하여 複數의 請求項의 記載를 許容하지 아니한다는 態度로 審査에 임하면 될 것이다. <♣>

안 본회 회원사 주소 (전화) 이전 내 타-스 유기화학

본사·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388-4L
☎ (代) (032) 811-0220 FAX : (032) 811-0224
기술연구소 : (032) 811-0225 FAX : (032) 811-0224
서울사무소 : (02) 575-0882 FAX : (02) 575-0883